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안 제17조의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의 생산시설 설치) ① 법 제26 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이 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u>5천제곱</u> <u>미터</u> 이하인 생산시설을 말한 다. ② ~ ⑤ (생 략)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의 생산시설 설치) ① ----- ----- ----- ----- <u>1만5천제</u> <u>곱미터</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911